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4. 11 선고 2022가단2724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 트러스트

담당변호사 이임표, 안혜정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4. 11.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과점주주이자 대표자로서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2022. 4. 29.경 납부통지를 받았는바(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2022. 5. 23. 현재 936,232,86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순번	세목	귀속	고지세액	고지일	납부기한	체납세액
1	법인세	201612	10,167,680	2022-04-29	2022-05-19	10,701,460
2	법인세	201712	12,843,720	2022-04-29	2022-05-19	13,517,990
3	법인세	201812	22,533,390	2022-04-29	2022-05-19	23,716,390
4	법인세	201912	158,835,740	2022-04-29	2022-05-19	167,174,590
5	법인세	202012	282,597,230	2022-04-29	2022-05-19	284,104,540
6	부가가치세	201601	20,929,200	2022-04-29	2022-05-19	22,027,950
7	부가가치세	201607	40,082,500	2022-04-29	2022-05-19	41,186,800
8	부가가치세	201701	34,876,020	2022-04-29	2022-05-19	36,707,010
9	부가가치세	201707	38,953,830	2022-04-29	2022-05-19	40,998,890
10	부가가치세	201801	46,555,580	2022-04-29	2022-05-19	48,999,720
11	부가가치세	201807	22,869,910	2022-04-29	2022-05-19	24,070,560
12	부가가치세	201901	57,992,180	2022-04-29	2022-05-19	61,036,760
13	부가가치세	201907	34,870,260	2022-04-29	2022-05-19	36,700,920
14	부가가치세	202001	59,285,800	2022-04-29	2022-05-19	61,463,120
15	부가가치세	202007	58,982,090	2022-04-29	2022-05-19	61,137,900
16		202107	1,632,370	2022-03-04	2022-06-11	1,688,260
합 계	904,007,500			936,232,860		

나. 피고와 B는 2021. 8. 31.경 협의이혼에 관한 합의를 하면서 B는 피고에게 위자료 250,000,000원을 지급하고, B는 C에 대한 권리, 모터보트(등록번호 D), 에스텍마린장보고보트트레일러, BMW 자동차를 소유하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디스커버리 승용차, 2021. 9. 6. 매매계약에 기하여 취득 예정인 남양주 E에 관한 권리를 소유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분할합의'라 한다)하였다.

다. B는 2021. 9.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21. 10. 5. B와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22. 5. 26.경 소외 F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해 4.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거래가액은 61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을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B로부터 단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B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B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양도받은 것인바, 피고가 아픈 B를 대신하여 홀로 생계를 책임지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는 B의 소외 G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는 그 피담보채무 475,000,000원을 공제한 135,165,0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사해행위취소권의 성립 여부 및 원상회복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로 성립하여 확정되는 것으로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액 부족 등의 법적 요건사실의 발생에 따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국세징수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다(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C에 대한 조세채권의 과세기간이 경과되어 그 기초가 성립하여 있었던 점,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가 법정되어 있어 C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B로서는 C이 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신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22. 4. 29. B에 대한 납부통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와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 관계가 성립하여 있었고,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확정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B의 채무초과상태

B의 재산상태가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구 분	내 역	평가액	입증자료	
적극재산	비상장주식	C 주식 4,000주	20,000,000	약면가액
	아파트	이 사건 부동산	610,000,000	매매사례가액
	토지	남양주시 E 입야 389㎡	81,284,000원	
	금융자산		0	
	모터보트		3,500,000원	
	자동차	에스텍마린장보고보트	1,980,000원	
		트레일러		
		BMW 자동차	5,814,900원	
		디스커버리 승용차	28,900,000원	
	소계		751,478,900	
소극재산	조세	법인세	499,184,470	
	조세	부가가치세	435,246,030	
	채무	G	475,000,000	
	소계		1,409,430,500	
사해행위 당시			-657,951,600	

순자산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은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이 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와 B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본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의하면 협의이혼일인 2021. 10. 5. 기준으로 한 피고와 B의 분할대상 재산은 아래와 같다.

○ B 명의로 분할하기로 한 적극재산 : 합계 31,294,900원

- C 주식 4,000주 20,000,000원

- 모터보트 3,500,000원

- 에스텍마린장보고보트 트레일러 1,980,000원

- BMW 자동차 5,814,900원

○ B 명의 소극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또한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고,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조세채권 : 936,232,860원

이 사건 조세채권은 B가 C의 과점주주로서 부담하는 것으로서 B가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도 용인하였던 것으로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 G에 대한 채무 : 475,000,000원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의 G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연대보증하였고 이를 2022. 5.경 모두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 명의로 분할하기로 한 적극재산 : 합계 721,484,000원

- 디스커버리 승용차(차량번호 1 생략) 28,9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 610,000,000원

- 남양주시 E 임야 389㎡ 81,284,000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순재산은 (-)658,453,960원(= 31,294,900원 + 721,484,000원 - 936,232,860원 - 475,000,000원)이고, 그 중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재산분할을 하여 피고가 재산분할로 취득한 순재산은 721,484,000원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B가 1988. 9. 29. 혼인하였다가 2021. 10. 5. 협의이혼 신고를 하여

혼인기간이 33년에 달하는 점, B와 피고가 모두 경제활동을 하여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와 B가 혼인생활에 있어 자산증식 및 자녀 양육에 각각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와 B의 재산분할 비율을 50 : 50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에게 귀속될 재산가액의 한도는 위 순재산의 50%인 (-)329,226,980원[= (-)658,453,960원 × 50%]이 된다.

그렇다면 B와 피고 사이의 재산분할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종국적으로 B가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피고는 오히려 이 사건 분할합의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증여계약을 통해 61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721,484,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소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당시 가액이 61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상당인 6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별지